



# 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
## 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0.10.4.)
- 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-1113(2020.10.13.)호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, 감염병예방법)」 개정(2020.8.12.)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,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.10.13. 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
3. 이에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왔으니, 각 부서 및 소속(산하)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'20.10.4.)보고

○ **적용기간:**감염병 위기 "경계"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2020.11.12.) 부여

○ **법적근거:**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~4호, 제83조

○ **과태료 부과 대상 등:** 상세내용 <붙임> 참조

붙임: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소속기관(농을), 산하기관(농병)



---

주무관 김지윤 사무관 김승동 운영지원과장 전결 2020. 10. 16.  
김수일

협조자 주무관 한재석

시행 운영지원과-15956 (2020. 10. 16.) 접수 축산경영과-5684 (2020. 10. 19.)

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1255 팩스번호 044-868-0847 / [natsu23@korea.kr](mailto:natsu23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